

2014-2015

大韓民國學術院



大韓民國學術院



CONTENTS

I . 概況	1. 設立目的	4
	2. 機能	4
	3. 主要沿革	4
II . 組織	1. 機構表	5
	2. 機能	6
	3. 會員 選出 및 禮遇	7
	4. 學術院事務局	7
III . 會員 現況	1. 任員	8
	2. 會員	9
	3. 名譽會員	14
	4. 會長團	15
	5. 歷代會長	15
IV . 主要活動	1. 學術研究	16
	2. 學術세미나 및 政策討論會	16
	3. 大韓民國學術院賞	16
	4. 國際學術大會	16
	5. 學術交流	17
	6. 學術資料 發刊	18
	7.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 · 補給	18
V . 大韓民國學術院法		19

I. 概況

1. 設立目的

大韓民國學術院은 學術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科學者를 優待·支援하고 學術研究와 그 支援 事業을 行함으로써 學術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2.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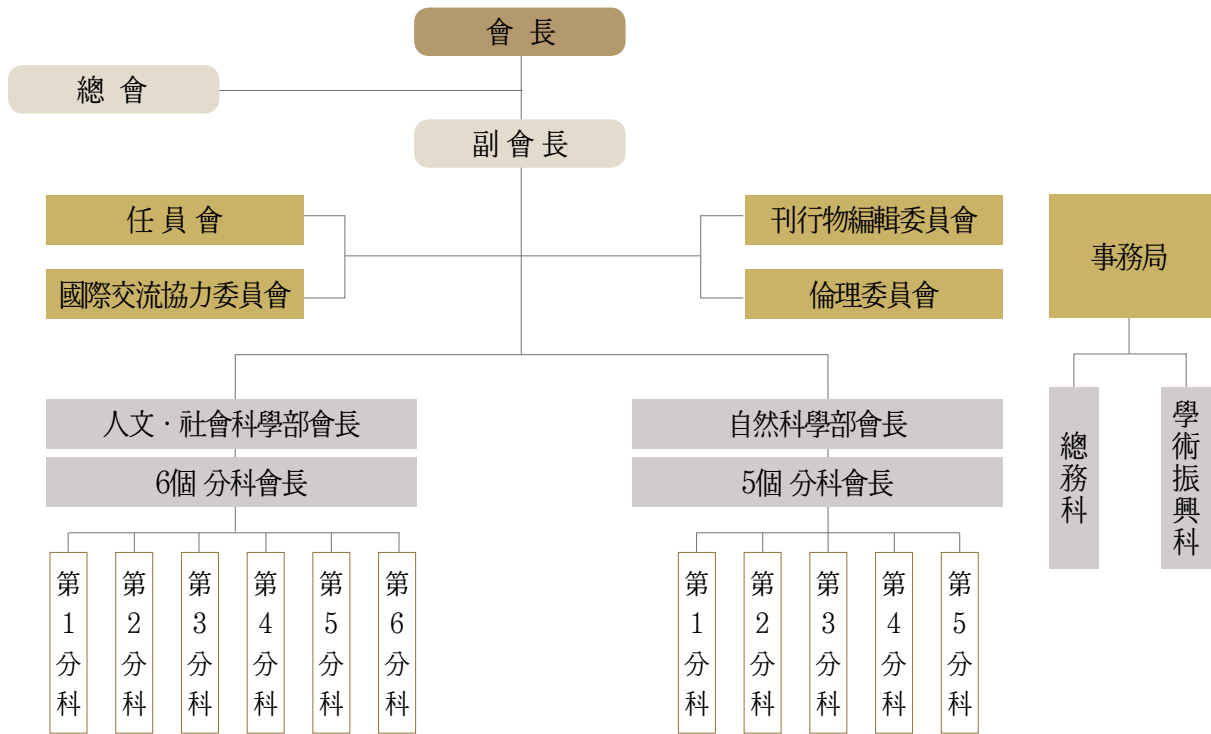
- 國家의 學術振興에 관한 政策 諮問 및 建議
- 學術研究와 그 支援
- 國內·外 學術交流 및 學術行事 開催
- 學術院賞 授與
-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補給
- 기타 學術振興에 관한 事項

3. 主要沿革

- 1952. 8. 7. 文化保護法 制定 公布로 學術院 設立根據 마련 (法律 第248號, 會員定員 80人)
- 1954. 7. 17. 學術院 開院(尹日善 博士 初代會長 就任)
- 1960. 2. 3. 文化保護法 改正(會員定員 80人 → 100人)
- 1986. 4. 16. 財團法人 學術院研究財團 設立
- 1987. 8. 20. 第16次 太平洋科學大會(PSA) 開催
- 1987. 10. 15. 廳舍 新築 移轉(景福宮 → 盤浦4洞 山 94-4)
- 1988. 12. 31. 大韓民國學術院法 制定 公布 (法律 第405號, 會員定員 100人 → 150人)
- 2002. 4. 20.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支援事業 시작
- 2002. 12. 5. 大韓民國學術院法 改正(名譽會員 制度 導入)
- 2004. 5. 13. 第4次 아시아學術會議(SCA) 總會 및 國際學術심포지엄 開催
- 2010. 1. 13. 國際學術機構프로젝트 研究事業遂行
- 2011. 6. 7. 大韓民國學術院法 改正(平生會員制 導入)
- 2013. 9. 25. 第8回 韓·日 學術포럼 開催
- 2014. 4. 1. 第35代 權肅一 會長 就任
- 2014. 5. 14. 大韓民國學術院 開院 60週年 記念式

II. 組織

1. 機構表



[分科別 專攻分野 및 定數]

(2014. 12.)

部別	分科別	專攻分野	會員		名譽會員
			定員	現員	
人文·社會科學部	第1分科	哲學, 倫理學, 論理學, 美學, 宗教學, 教育學, 心理學	13	13	
	第2分科	語文學	13	11	
	第3分科	史學, 考古學, 民俗學, 人文地理學, 文化人類學	13	12	1
	第4分科	法學	12	11	1
	第5分科	政治學, 行政學, 社會學	12	11	
	第6分科	經濟學, 經營學	12	12	
		小計	75	70	2
自然科學部	第1分科	數學, 物理學, 化學, 天文學, 氣象學	15	14	3
	第2分科	生物學, 地質學, 體育學, 營養學, 家政學	15	15	1
	第3分科	建築工學, 金屬工學, 機械工學, 纖維工學 資源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造船工學, 土木工學, 航空工學, 機械力學, 情報通信工學	15	15	1
	第4分科	醫學, 齒科醫學, 獸醫學, 藥學	15	15	2
	第5分科	農學, 林學, 畜產學, 水產學	15	13	
		小計	75	72	7
		合計	150	142	9

2. 機能

■ 總會

總會는 大韓民國學術院의 會員 모두가 參與하는 最高議決機關이며, 會員·名譽會員의 選出 承認, 學術院賞 受賞者 認准, 學術院 會長·副會長 選出, 諸規程의 制·改正 등 學術院 運營에 필요한 主要事項을 審議·議決한다. 總會는 每年 3월과 7월에 開催하고, 그 밖에 特別히 處理하여야 할 事項이 있는 境遇에도 開催한다.

■ 部會

部會는 人文·社會科學部會와 自然科學部會가 있으며, 部會에서는 會員·名譽會員 候補者 選出과 部門別 學術院賞 受賞者 選定, 部會長 互選 등을 한다.

■ 分科會

大韓民國學術院의 會員은 專攻에 따라 어느 한 分科會에 所屬되어 活動하게 되며, 人文·社會科學부에 6個 分科, 自然科學부에 5個 分科 등 總 11個 分科가 設置되어 있다. 分科會는 1년에 7回 開催되며 會員·名譽會員 候補者 資格 審査, 學術院賞 豫備審査, 會員의 學術研究 發表와 討論 등을 한다.

■ 任員會

任員會는 會長, 副會長, 人文·社會科學部會長, 自然科學部會長과 11人의 分科會長으로 構成되며,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과 總會에 附議하여야 할 事項, 그 밖에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審議 또는 議決한다. 會長과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되고 任期는 2年(1回 連任 可能)이며, 部會長은 部會에서 選出되고 任期는 1年이고, 分科會長은 分科會에서 互選하며 任期는 1年이다.

■ 學術院賞審査委員會

學術院賞 受賞者를 選定하기 위한 審査는 分科會 豫備審査, 部門別審査委員會의 部門別 審査, 綜合 審査委員會의 綜合審査 등 3段階 審査가 있으며, 部門別 審査委員會는 5名 以上 13名 以下の 委員으로 構成하며 綜合審査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人文·社會科學部會長, 自然科學部會長과 11人의 分科會長으로 構成한다.

■ 國際交流協力委員會

大韓民國學術院이 加入한 國際學術機構에 관한 業務를 處理하고, 學術에 관한 國際協力業務와 國際의인 學術賞에 관한 情報 및 資料 蒐集 등 學術院 國際交流活動 全般에 관한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委員會는 副會長, 部會長 등 3人의 當然職 委員과 名 分科에서 委囑된 11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刊行物編輯委員會

會長, 副會長, 人文·社會科學部會長, 自然科學部會長과 각 分科에서 選定된 委員 11人으로 構成되며, 大韓民國學術院이 發刊하는 刊行物の 發刊 基本計劃의 樹立, 執筆者 委囑, 原稿審查, 기타 編輯에 관한 事項 등을 審査·決定한다.

■ 倫理委員會

副會長 및 各 分科에서 選定된 會員 11人으로 構成되며, 學術院 會員으로서의 名譽와 品位를 損傷시킨 會員에 대한 措置方案을 審議·議決한다.

3. 會員選出 및 禮遇

■ 會 員

- 選出 : 會員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高等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이와 同等 以上の 學校를 卒業하고 學術研究 經歷이 20年 以上인 者 또는 學術研究 經歷이 30年 以上인 者로서 學術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者 중에서 學術院 會員 또는 學術院이 指定하는 該當分野 學術團體의 推薦을 받아 會員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該當 部會에서 會員候補者를 決定하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出되며, 任期는 平生으로 한다.
- 禮遇 : 國家는 會員을 優待하고 그 學識과 經驗을 活用할 수 있도록 學術研究 活動費, 會議 參席手當, 每月 定額의 手當 등을 支給한다.

■ 名譽會員

- 選出 : 名譽會員은 學術研究 實績이 卓越하여 國際的으로 認定을 받고 우리나라의 學術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外國人 중에서 學術院 會員 또는 學術院이 指定하는 學術團體의 推薦을 받아 分科會 및 名譽會員審査委員會 審査를 거쳐 該當 部會에서 議決하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任되며 任期는 4年이고 連任할 수 있다.
- 禮遇 : 名譽會員이 會議 또는 行事に 參席하거나 研究 등을 遂行하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旅費 등을 支給한다.

4. 學術院事務局

大韓民國學術院의 事務를 支援하기 위하여 教育部 所屬으로 學術院事務局을 두고있다. 學術院事務局에는 事務局長(高位公務員), 總務課와 學術振興課를 두고 있으며 公務員 定員은 17人이다.

Ⅲ. 會員 現況

1. 任員

- 會長：權 肅 一 (物 理 學)
- 副 會 長：李 成 茂 (國 史 學)

- 人文·社會科學部會長：林 熿 燮 (社 會 學)
 - 第 1 分 科 會 長：吉 熙 星 (佛 教 哲 學)
 - 第 2 分 科 會 長：金 學 主 (中 國 文 學)
 - 第 3 分 科 會 長：韓 相 福 (文 化 人 類 學)
 - 第 4 分 科 會 長：鄭 東 潤 (商 法)
 - 第 5 分 科 會 長：慎 鏞 廈 (社 會 學)
 - 第 6 分 科 會 長：李 鶴 容 (經 濟 學)

- 自然科學部會長：金 洙 鎮 (鑛 物 學)
 - 第 1 分 科 會 長：趙 成 浩 (物 理 學)
 - 第 2 分 科 會 長：朴 相 大 (生物學(細胞分子遺傳學))
 - 第 3 分 科 會 長：羅 正 雄 (電 子 工 學)
 - 第 4 分 科 會 長：金 榮 中 (藥 學 (生 藥 學))
 - 第 5 分 科 會 長：黃 炳 國 (植 物 病 理 學)





2. 會員

[第1分科] 哲學, 倫理學, 論理學, 美學, 宗教學, 教育學, 心理學



金奎榮
(西洋哲學)



鄭範謨
(教育學)



曹大京
(心理學)



鄭鎮弘
(宗教學)



車載浩
(心理學)



趙明翰
(心理學)



吳昞南
(美學)



李敦熙
(教育哲學)



李星珍
(教育心理學)



吉熙星
(佛教哲學)



蘇光照
(西洋哲學)



尹絲淳
(東洋哲學)



李漢龜
(英美哲學)

[第2分科] 語文學



鄭明煥
(佛文學)



李基文
(國語學)



金完鎭
(國語學)



張奭鎭
(言語學)



金顯場
(스페인文學)



金容稷
(韓國現代文學)



李京植
(英文學)



趙東一
(韓國古典文學)



洪在星
(佛語學)



金學主
(中國文學)



李廷珉
(言語學)

[第3分科] 史學, 考古學, 民俗學, 人文地理學, 文化人類學



全海宗
(東洋史)



李佑成
(韓國史)



金容燮
(韓國史)



車河淳
(歷史學)



李成茂
(國史學)



李琦錫
(人文地理學)



李基東
(韓國史)



金榮漢
(西洋史)



李成珪
(東洋史)



李泰鎭
(韓國政治社會史)



韓相福
(文化人類學)



崔秉鉉
(考古學)

[第4分科] 法學



金鍾源
(刑法)



金正均
(國際法, 法哲學)



金哲洙
(憲法)



高翔龍
(民法)



金南辰
(行政法)



鄭東潤
(商法)



朴秉濠
(韓國法制史, 家族法)



金相容
(民法)



沈憲燮
(法哲學)



金孝全
(憲法學)



李炯國
(刑事法)



[第5分科] 政治學, 行政學, 社會學



車基璧
(比較政治)



林熺燮
(社會學)



姜信澤
(行政學)



安秉俊
(國際政治學)



金璟東
(社會學)



金容九
(國際政治學)



陳德奎
(政治學)



白完基
(韓國行政及行政文化)



李正馥
(現代韓國政治)



金弘宇
(政治思想)



慎鏞廈
(社會學)

[第6分科] 經濟學, 經營學



李賢宰
(經濟學)



趙淳
(經濟學)



邊衡尹
(經濟學)



金東基
(經營學)



朴光淳
(經濟學)



尹起重
(經濟學)



郭秀一
(經營學)



鄭基俊
(經濟學)



金基永
(經營學)



柳莊熙
(經濟學)



李鶴容
(經濟學)



李之舜
(經濟學)

自然科學部

[第1分科] 數學, 物理學, 化學, 氣象學



張世憲
(化學)



尹甲炳
(數學)



安世熙
(核物理學)



盧在植
(大氣科學)



高允錫
(核物理學)



朴世熙
(數學)



權肅一
(物理學)



奇宇恒
(數學)



李益春
(物理化學)



金容海
(有機化學)



李 穩
(有機化學)



趙成浩
(物理學)



宋熙星
(物理學)



李鎬仁
(觸媒化學)

[第2分科] 生物學, 地質學, 體育學, 營養學, 家政學



鄭昌熙
(地質學)



朱軫淳
(營養學)



李商萬
(岩石學)



金熏洙
(動物分類學)



李永祿
(分子生物學)



金洙鎭
(鑛物學)



金俊鎬
(生物學)



李貞珩
(家政學)



河斗鳳
(生物學)



朴相大
(細胞分子遺傳學)



孟元在
(營養學)



林繁藏
(體育學)



張浩完
(地球化學)



金相九
(植物分子遺傳學)



鄭鎮河
(分子生物學)



[第3分科] 建築工學, 金屬工學, 機械工學, 纖維工學, 資源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造船工學, 土木工學, 航空工學, 機械力學, 情報通信工學



康明順
(機械工學)



尹張燮
(建築學)



李承院
(電氣工學)



金商周
(金屬材料工學)



朴仲鉉
(土木工學)



金相溶
(纖維工學)



盧五鉉
(航空工學)



李忠雄
(電子工學)



尹德龍
(金屬材料工學)



玄炳九
(資源工學)



羅正雄
(電子工學)



韓松晔
(電氣工學)



崔恒洵
(造船海洋工學)



李長茂
(機械力學)



李秉基
(情報通信工學)

[第4分科] 醫學, 齒科醫學, 獸醫學, 藥學



李鎬汪
(微生物學)



權彛赫
(預防醫學)



李相燮
(藥學)



文國鎭
(法醫學)



金周煥
(齒醫學)



金勇一
(病理學)



金洛斗
(藥物學)



金炳洙
(腫瘍學)



李純炯
(寄生蟲學)



金榮中
(生藥學)



金丁龍
(內科學)



高在丞
(齒醫學)



申喜燮
(遺傳學, 神經科學)



李榮純
(獸醫病理學)



李承奎
(外科學)

[第5分科] 農學, 林學, 畜産學, 水産學



李春寧
(農化學)



趙載英
(食用作物學)



吳鳳國
(畜産學)



崔炳熙
(絹絲工學)



洪性珏
(樹木生理學)



田世圭
(魚病學)



李炳駙
(園藝學)



金顯旭
(畜産加工學)



黃炳國
(植物病理學)



柳順昊
(土壤物理學)



張東錫
(水産食品衛生學)



李弘利
(作物學)



金潤受
(木材生物學)

3. 名譽會員



John R. Schrieffer
(Physics)
U.S.A.



Ryoji Noyori
(Organometallic
Chemistry)
Japan



Saburo Nagakura
(Dynamics, Electronic
Structure)
Japan



Jan Lindsten
(Human
Cytogenetics)
Sweden



Jürgen Kocka
(History of Modern Germany and
Europe, Social History,
Comparative) Germany



Achenbach, Jan Drewes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U.S.A.



Christian Starck
(Constitutional Law)



Takashi Sugimura
(Biochemistry · Oncology)
Japan



Peter Gruss
(Molecular
cell biology)
Germany



4. 會長團



權肅一
(會長)



李成茂
(副會長)



林燾燮
(人文·社會科學部會長)



金洙鎮
(自然科學部會長)

5. 歷代會長



尹日善
(1~6代, 1954~1960)



李丙燾
(7~17代, 1961~1980)



申泰煥
(18代, 1981~1982)



沈鍾燮
(19~21代, 1983~1987)



徐燾珩
(22~23代, 1988~1991)



權彛赫
(24~25代, 1992~1995)



李賢宰
(26~27代, 1996~1999)



李鎬汪
(28~29代, 2000~2004)



金泰吉
(30~31代, 2005~2008)



金商周
(32~33代, 2008~2012)



朴煥植
(34代, 2012~2013)

學術院事務局



IV. 主要活動

1. 學術研究

學術院 會員들의 持續的인 學術研究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每年 研究者를 選定, 學術研究費를 支援하고 있다. 學術研究는 分科別로 研究가 遂行되며, 研究結果는 分科세미나·學術세미나·政策討論會 등에서 發表하고, 學術院論文集에 掲載하여 國內·外 學術機關에 配布하고, 政策課題는 關聯部處에 建議하여 政策樹立에 反映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國際學術機構 프로젝트 研究事業을 통해 會員들의 國際學術機構 參與活動을 積極 支援하고 있다.

2. 學術세미나 및 政策討論會

學術院 會員들의 오랜 研究經綸과 뛰어난 學識을 살려 우리나라의 學術發展과 政府의 政策決定에 寄與하고자 每年 學術세미나와 政策討論會를 開催하고 있다. 學術세미나는 每年 5월에 열리고, 分科세미나는 隨時로 開催하며, 政策討論會는 11월에 開催한다.



3. 大韓民國學術院賞

學術院에서는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論文 또는 著書가 優秀하여 學術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거나 크게 寄與할 것으로 認定된 사람에게 大韓民國學術院賞을 授與함으로써 學問의 發展에 寄與하고 있다. 學術院賞은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基礎, 自然科學應用 네 分野에서 總 6人 以內的 受賞者를 選定·施賞한다.

受賞者에게는 賞狀과 메달, 賞金 5천만원을 授與한다. 1955년부터 2014년까지 228人을 施賞하였고 第59回 大韓民國學術院賞 施賞式은 2014年 9月 17日에 開催하였다.



4. 國際學術大會

國內·外 著名한 學者들을 招請하여 새롭게 擡頭되는 學術課題를 討論하고 未來社會의 學術發展에 寄與하고자 每年 10月 중에 國際學術大會를 開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科學技術과 人文學의 만남'이라는 主題로 10月 17日에 開催하였다.



5. 學術交流

■ 國際學術機構 加入

學術院은 國際學術機構에 加入하여 代表者를 派遣하고 學術大會에 參席하는 등 活潑한 國際交流活動을 遂行하고 있다. 加入한 國際學術機構數는 總 9개이며 太平洋科學協會(PSA), 國際科學聯盟理事會(ICSU), 國際科學財團(IFS), 國際學術院聯合(UAI), 國際地球圈·生物圈研究計劃(IGBP), 아시아學術會議(SCA), 國際學術院委員會(IAP), 國際學術院醫學委員會(IAMP), 國際社會科學理事會(ISSC)이다.

■ 外國學術院과 交流

學術院은 우리나라 學術機關을 代表하여 現在 14個 外國 學術院과의 學術交流 協定을 締結하여 相互交換訪問, 學術資料 交換 등 學術交流 活動을 活潑히 하고 있으며, 2012年 上半期 괴팅겐學術院과 學術交流 協定을 締結하였다.

年度	協定締結學術院
1990	이스라엘學術院(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1992	프랑스과학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Institut de France)
1993	中國科學院(Chinese Academy of Sciences), 中國社會科學院(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美國學術院(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英國王室學會(The Royal Society of London)
1995	英國學術院(The British Academy)
1996	노르웨이學術院(The Norwegian Academy of Sciences and Letters)
1997	스웨덴왕립人文科學院(The Royal Swedish Academy of Letters, History and Antiquities), 몽골 學術院(Th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1998	스웨덴왕립學術院(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日本學士院(The Japan Academy)
2010	크로아티아학술원(Croati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2012	괴팅겐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 韓·日 學術포럼

大韓民國學術院과 日本學士院 間的 相互理解關係를 增進시키고 學術交流活動을 통해 學問의 發展에 寄與하고자, 2006년부터 韓·日 學術포럼을 開催하였다. 2013년에는 서울大學校 湖巖教授會館에서 '法學과 醫學'이라는 主題로 開催되었고, 2014년에는 日本學士館에서 '古考學·史學 및 獸醫學'이라는 主題로 談論의 場이 마련되었다.



6. 學術資料 發刊

學術院은 每年 學術에 관한 資料를 發刊하여 國內·外 學術機關에 配布하며, 學術資料 發刊은 學術院刊行物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發刊한다.

- 學術院論文集
- 學問研究의 動向과 爭點
- 國際學術大會論文集
- 大韓民國學術院會報
- 大韓民國學術院便覽
- 國際學術交流報告書
- 學術院國·英文 브로셔
- 學術院英文要覽
- 學術院通信



7.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補給

學術院은 2002년부터 教育部에서 基礎學問育成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優秀學術圖書選定·支援 事業을 委託 받아 遂行하고 있다. 優秀學術圖書 選定 對象은 人文學, 社會科學, 韓國學, 自然科學 分野의 學術圖書로서 公正한 審査를 거쳐 優秀學術圖書를 選定·購入하여 大學, 研究所 등에 補給한다. 2014년에는 300種의 優秀學術圖書를 選定하여 大學, 研究所 등에 普及하였다.



V. 大韓民國學術院法

법률 제11690호, 2013.3.23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 ③ 학술원에 인문·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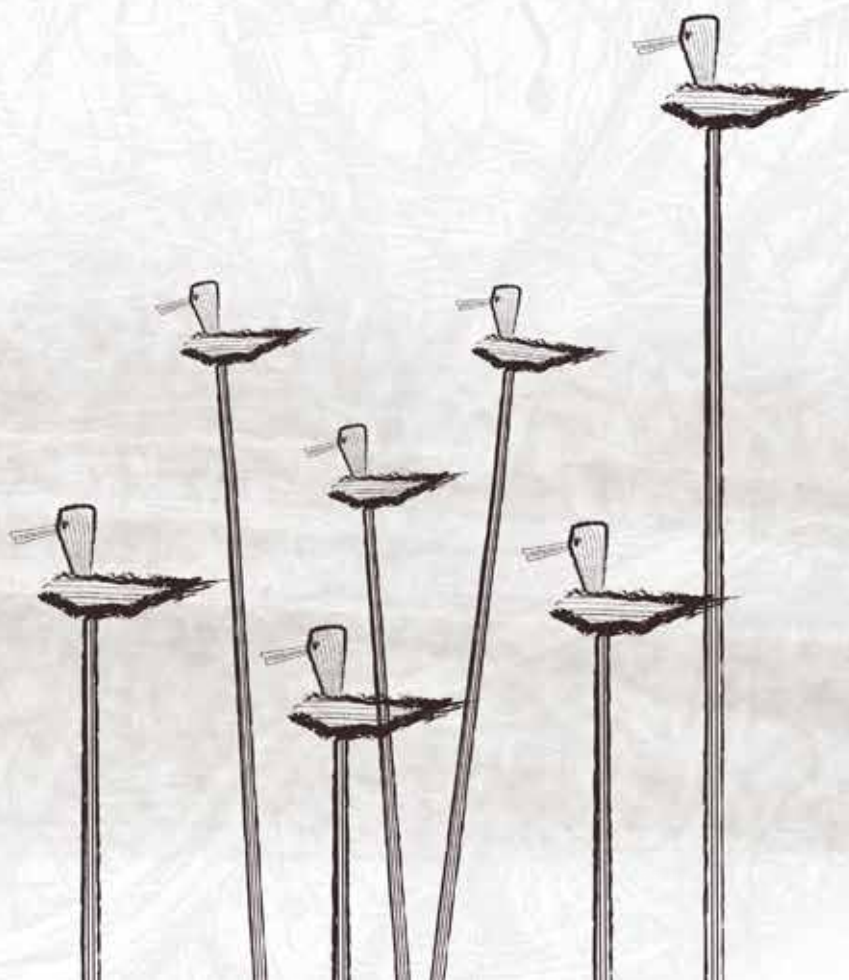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學術院

137-044 서울특별시 瑞草區 盤浦大路 37길 59

電話 : 3400-5250, FAX : 535-8836

<http://www.nas.go.kr>